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9119 제출연월일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4제1항제4호 중 "여성가족부렁으로"를 "여성가족부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8조의4(청소년부모에 대한 교	제18조의4(청소년부모에 대한 교		
육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	육지원) ①		
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			
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			
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	
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	4		
지원을 위하여 <u>여성가족부령</u>	<u>여성가족부령</u>		
<u>으로</u> 정하는 사항	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		
	례로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